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6 1 호

제출연월일 : 1996년 1월 12일
제 출 자 : 예 산 군 수

1. 개 정 이 유

○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코자 함.

2. 주 요 골 자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확대 (안 제2조제2항).
- 상이급수 1 ~ 5급 → 1 ~ 6급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안 제5조의2).
- 유료노인복지시설 사용 부동산 - 재산세 및 종토세의 50/100 경감

○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추가 (안 제6조).
- 과학관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등록)

○ 짚형자동차 세율개정 (안 제16조).

배 기 량	씨 씨 당 세 액 (원)		
	현 행	개 정	인 상
1,000씨씨이하	110	-	-
2,000씨씨이하	140	160	20
2,500씨씨이하	-	180	-
3,000씨씨이하	165	200	35
3,000씨씨초과	200	230	30

○ 부칙

- 적용시한 : 1997. 12. 31까지

3. 참 고 사 항

○ 지방세법 제9조

○ 예산군세감면조례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 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1조제2항중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를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 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지정을 받은 자 및" 을 "지정을 받은 자와" 로 하고, "참여자" 를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로 한다.

제16조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2,000씨씨이하	10 원	160 원
2,500씨씨이하	12 원	180 원
3,000씨씨이하	12 원	200 원
3,000씨씨초과	15 원	230 원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설>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의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제6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현 행	개 정 안
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 ----------
제12조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제12조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①----------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	2. ---------- 지정을 받은자와 ----------

현 행	개 정 안
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
3.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	제16조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씨씨이하	10원	110원
1,000씨씨초과 2,000씨씨이하	10원	140원
2,000씨씨초과 3,000씨씨이하	12원	165원
3,000씨씨초과	15원	200원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2,000씨씨이하	10원	160원
2,500씨씨이하	12원	180원
3,000씨씨이하	12원	200원
3,000씨씨초과	15원	230원